

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자 : 이천시장

2. 제출일자 : 2002.4.19

3. 관련규정

- 도시계획법 제33조(지구의 지정)제2항,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(지구의 지정) 제2항 제5호

4. 조례안 주요내용

- 제1조 - 동조례안의 목적을 규정
- 제2조 - 동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기본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
- 제3조 -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동안의 적용 범위를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로 한정
- 제4조, 제5조 - 지구지정의 기본방향과 지구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본요건을 규정
- 제6조 - 지구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역별로 규정
- 제7조 - 지구지정의 효율성, 위험 등 지구지정에 예외가 되는 대상지역을 규정
- 제8조 - 지구지정의 대상이 되는 하한호수와 예외호수에 대하여 규정
- 제9조 - 지구의 경계 설정을 위한 대지밀도, 호수밀도 등의 기준을 규정
- 제10조 - 지구의 경계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
- 제11조 - 지구의 지정 외에 자연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을 규정
- 제12조 -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폐율·용적율 및 대지 최소면적에 관하여 적용법령준용사항 규정
- 제13조 - 지구단위계획 수립·시행의 근거 규정

5. 검토내용

-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가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령 제62조 제1항 제16호 내지 18호가 보전·생산·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퍼센트로 규정하면서, 예외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완화함에 따라 동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해당 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